

의안번호	2207120
의 퇴 인	윤영석의원
회 답 일	2025.1.13.
추계번호	24B639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토석채취지의 산지전용허가를 위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심의를 받게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총 7억원 (연평균 1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안 제18조)	140	140	140	140	140	700	1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제4항)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자가 해당 토석을 채취 후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있는 산지	의무지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 산림청 제출자료 및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8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토석채취지가 산지전용타당성 심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심의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향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회 개최 횟수와 심의회의 민간위원 수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심의회 개최 횟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민간위원 수는 2023년 기준 평균 실적치를 준용함
- 산림청의 의견에 따라, 산지관리위원회 심의회 개최 횟수와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 참석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가재정소요는 토석채취지의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타당성 심의 비용으로 가정하며, 심의회 개최 건수에 민간위원 수와 참석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심의회 개최 건수) 산림청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토석채취지의 산지전용허가를 심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최가 예상되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회 횟수는 연 39회임
 - 최근 5년간 평균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신고 산지 심의 건수(78건)에 심의회 1회당 심의 건수(2건)을 나누어 산출함
 - (민간위원 참석 수당 단가) 산림청의 의견에 따라, 참석수당은 1회당 30만원으로 가정함
 - (민간위원 수) 산림청의 의견에 따라, 2023년 기준 총 심의회 횟수 당 평균 출석 위원 수를 준용하며 해당 실적치는 12명임
- 추계결과, 토석채취지의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심의를 받게 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 매년 1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총 7억원 (연평균 1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심의개최 횟수 (건, A)	39	39	39	39	39
참석수당 단가 (원, B)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민간위원 수 (명, C)	12	12	12	12	12
추가재정소요 (D=A×B×C)	140	140	140	140	1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산림청의 의견 및 최근 5년간의 실적치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심의회의 개최 횟수와 참여 인력의 규모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